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무역보험기금)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보험기금)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7년도 운용총칙 ····· 3

2. 참고사항 ····· 4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 9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 12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1. 자체수입 ····· 17

2. 정부내부수입 ····· 22

3. 여유자금회수 ····· 24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1. 기금운영비 ····· 29

2. 사업비 ····· 30

(1) 단기무역거래지원 ····· 31

(2)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 38

(3)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 48

(4)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 54

(5) 무역보험채권관리 ····· 58
(6)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 61
(7) 차입금이자상환 ····· 64
(8) 무역보험환급금등 ····· 67

3. 여유자금운용 ····· 82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85
2. 추정재정상태표 ····· 86
3. 추정재정운영표 ····· 87
4. 보유자산총괄표 ····· 88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 89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 90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91
8. 성과계획서 ····· 92

Ⅰ. 기금 운용총칙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7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촉진 사업 지속 수행
○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및 미개척시장 진출에 대한 수출지원규모 확대
○ 무역보험 사고채권의 회수 제고를 통한 사업운영 건전성 제고
○ 중소수출기업의 무역보험 미부보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서비스 제공
○ 해외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수출기업의 예방적 위험관리 도모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3,302,170	계	3,302,170
○ 자체수입	1,052,549	○ 사업비	760,516
○ 정부내부수입	-	○ 기금운영비	110,459
○ 여유자금회수	2,249,621	○ 여유자금운용	2,431,195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계획(A)	2017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500,000	500,000	-	-
○ 일시차입금	-	-	-	-
○ 차입금	500,000	500,000	-	-
- 장기차입금	-	-	-	-
- 채권발행	500,000	500,000	-	-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정부출연금, 보험료, 회수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보험금, 기금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및 국공채, 수익증권 등에 투자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계획(A)	2017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4,112,585	4,261,126	148,541	-
○ 유동자산	2,725,234	3,261,588	536,354	-
○ 고정자산	1,387,351	999,538	△387,8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만기도래예상액 반영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1) 정 원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합계
정원	28	65	130	136	201	560

(2) 기구도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 1,052,549백만원

○ 관유물대여료 : 1,682백만원
- 사옥 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등

○ 이자수입 : 52,538백만원
-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운용 등을 통한 이자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 254,534백만원
-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용에 따른 환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743,795백만원
- 보험료 수입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헷지거래이익 등

□ 여유자금회수 : 2,249,621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069,252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0,000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국채매각대 : 12,034백만원
- 국채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공채매각대 : 95,156백만원
- 공채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933,179백만원
- 수익증권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나. 지출계획

□ 사업비 : 760,516백만원

○ 무역보험지원운영 : 716,924백만원
- 무역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가격변동보험(환변동보험 등) 운영에 따른 헷지거래손실, 채권회수사업에 따른 경비 등

○ 무역보험환급금등 : 43,592백만원
- 기수납한 보험료 수입 중 보험관계의 해지·해제 및 무사고 등으로 환급되는 금액 등

□ 기금운영비 : 110,459백만원

○ 인건비 : 61,832백만원

○ 기타경비 : 39,337백만원

○ 정보화경비 : 9,290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2,431,195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1,232,487백만원
-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59,656백만원
-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

○ 국채매입 : 14,479백만원
- 국채 등 매입

○ 공채매입 : 106,183백만원
- 공채 등 매입

○ 기타유가증권매입 : 1,018,390백만원
- 수익증권 등 매입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수정(B)	(B-A)	%
수입	○자체수입	1,171,902	1,003,310	1,003,310	1,052,549	1,052,549	49,239	4.9
	- 관유물대여료	1,735	2,154	2,154	1,682	1,682	△472	△21.9
	- 이자수입	90,963	56,508	56,508	52,538	52,538	△3,970	△7.0
	- 기타경상이전수입	268,083	271,901	271,901	254,534	254,534	△17,367	△6.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11,121	672,747	672,747	743,795	743,795	71,048	10.6
	○정부내부수입	145,000	30,000	30,000	30,000	-	△30,00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45,000	30,000	30,000	30,000	-	△30,000	△100.0
	○차입금	-	-	-	-	-	-	-
	- 기타차입금	-	-	-	-	-	-	-
	○여유자금회수	1,481,599	2,342,933	2,342,933	2,249,621	2,249,621	△93,312	△4.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8,372	1,091,704	1,091,704	1,069,252	1,069,252	△22,452	△2.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00	359,373	359,373	140,000	140,000	△219,373	△61.0
	- 국공채매각대	70,000	105,179	105,179	-	-	△105,179	△100.0
	- 국채매각대	-	-	-	12,034	12,034	12,034	-
	- 공채매각대	-	-	-	95,156	95,156	95,156	-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533,227	786,677	786,677	933,179	933,179	146,502	18.6
합 계		2,798,501	3,376,243	3,376,243	3,332,170	3,302,170	△74,073	△2.2
지출	○사 업 비	599,990	751,013	751,013	760,516	760,516	9,503	1.3
	- 경상지출	599,990	751,013	751,013	760,516	760,516	9,503	1.3
	○기금운영비	99,908	108,035	108,035	110,459	110,459	2,424	2.2
	- 인건비	53,858	58,081	58,081	61,832	61,832	3,751	6.5
	- 기타운영비	46,050	49,954	49,954	48,627	48,627	△1,327	△2.7
	○여유자금운용	2,098,603	2,517,195	2,517,195	2,461,195	2,431,195	△86,000	△3.4
	- 통화금융기관예치	1,091,410	1,031,446	1,031,446	1,232,487	1,232,487	201,041	19.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27,291	327,291	89,656	59,656	△267,635	△81.8
	- 국공채매입	123,985	122,038	122,038	-	-	△122,038	△100.0
	- 국채매입	-	-	-	14,479	14,479	14,479	-
	- 공채매입	-	-	-	106,183	106,183	106,183	-
	- 기타유가증권매입	883,208	1,036,420	1,036,420	1,018,390	1,018,390	△18,030	△1.7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무역 및 해외투자 등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자체수입 증대 및 실질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기금건전성 제고

나. 수입계획 전망 ('17~'20년)

(억원)

구 분	'15실적	'16계획	'17요구	'18전망	'19전망	'20전망
수 입 규 모	27,985	33,762	33,022	34,593	37,055	39,625
○ 자체수입	11,719	10,033	10,526	10,888	11,240	11,637
- 관유물대여료	17	22	17	23	24	24
- 이자수입	910	565	526	686	751	840
- 기타경상이전수입	2,681	2,719	2,545	2,461	2,488	2,51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111	6,727	7,438	7,718	7,977	8,254
○ 정부내부수입	1,450	300	-	800	700	600
- 일반회계전입금	1,450	300	-	800	700	600
○ 차입금	-	-	-	-	-	-
- 기타차입금	-	-	-	-	-	-
○ 여유자금회수	14,816	23,429	22,496	22,905	25,115	27,399

□ 산출내역

○ 자체수입

- 관유물대여료 : 사옥 임대계획 및 임대료 예상에 따른 전망
- 이자수입 : 중기 자금운용수익률 예상에 따른 전망
- 기타경상이전수입 : 일반보험 회수금 및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등 전망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예상 지원실적 및 보험요율 등에 따른 전망

○ 정부내부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 계획 출연금 규모

○ 여유자금회수

-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및 유가증권 매각 : 여유자금 예치금 만기, 유가증권 매각계획 등에 따른 전망

다. 지출계획 전망 ('17~'20년)

(억원)

구 분	'15실적	'16계획	'17요구	'18전망	'19전망	'20전망
지 출 규 모	27,985	33,762	33,022	34,593	37,055	39,625
○사업비	6,000	7,510	7,605	7,180	7,258	7,351
<경상지출>	6,000	7,510	7,605	7,180	7,258	7,351
- 무역보험지원운영	5,798	7,018	7,169	6,759	6,823	6,900
- 무역보험환급금등	202	492	436	421	435	451
○기금운영비	999	1,080	1,105	1,195	1,257	1,324
- 인건비	539	580	619	665	711	762
- 기타운영비	460	500	486	530	546	562
○여유자금운용	20,986	25,172	24,312	26,218	28,540	30,950

□ 산출내역

○ 사업비

- 무역보험지원운영 : 종목별 인수목표 및 사고율 예상 반영
- 무역보험환급금등 : 보험관계의 해지·해제 또는 무사고 등으로 환급되는 금액 등

○ 기금운영비

- 무역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소요 반영

○ 여유자금운용

- 금융기관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자 체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171,902	1,003,310	1,003,310	1,052,549	1,052,549	49,423	4.9
○ 관유물대여료	1,735	2,154	2,154	1,682	1,682	△472	△21.9
○ 이자수입	90,963	56,508	56,508	52,538	52,538	△3,970	△7.0
○ 기타경상이전수입	268,083	271,901	271,901	254,534	254,534	△17,349	△6.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11,121	672,747	672,747	743,795	743,795	71,048	10.6

1. 수입개요

□ 수입 내용

○ 관유물대여료 : 1,682백만원
- 사옥 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등

○ 이자수입 : 52,538백만원
-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운용 등을 통한 이자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 254,534백만원
-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용에 따른 환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743,795백만원
- 보험료수입,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 근거

○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기금은 제31조 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실적

□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 관유물대여료	3,681	3,950	3,873	4,028	4,187	3,969	4,221	3,710	4,348	1,735	4.3	△18.6
(전년대비 증가율)	△0.8	1.9	5.2	2.0	8.1	△1.5	0.8	△6.5	3.0	△53.2	-	-
▪ 이자수입	63,773	65,935	75,189	52,664	70,457	78,751	67,974	76,682	74,881	90,963	4.1	8.4
(전년대비 증가율)	52.9	10.5	17.9	△20.1	△6.3	49.5	△3.5	△2.6	10.2	18.6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94,354	271,242	353,845	295,684	318,063	384,414	281,461	300,172	329,915	268,083	△2.9	△0.3
(전년대비 증가율)	△54.5	△56.6	20.2	9.0	△10.1	30.0	△11.5	△21.9	17.2	△10.7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21,863	542,200	651,050	599,929	704,235	754,885	640,045	538,263	695,317	811,121	7.4	10.6
(전년대비 증가율)	△2.4	6.0	24.8	10.6	8.2	25.8	△9.1	△28.7	8.6	50.7	-	-

○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주요사유	보험료, 가격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증가 및 회수금 수입 감소 등	일반보험 회수금 감소,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보험료 수입 증가 및 민간출연금(금융기관 특별출연금) 수령 등	이자수입 증가 및 민간출연금(금융기관 특별출연금) 수령 등	보험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 계획대비 수입 증가

3. 부처요구

□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6계획	1,003,310	▪ **관유물대여료 : 2,154백만원** - 본사사옥 임대수입 ▪ **이자수입 : 56,608백만원** - '16년 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880,864백만원)×목표수익율(1.99%)=17,529백만원 - '16년 비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288,372백만원)×목표수익율(1.75%)=5,047백만원 - '16년 국공채 등 채권 예상평잔(222,795백만원)×목표수익율(2.23%)=4,968백만원 - '16년 수익증권 예상평잔(1,392,471백만원)×목표수익율(2.08%)=28,964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271,901백만원** ○ 민간출연금 : 30,000백만원 - '16년 민간출연금 예상액 ○ 회수금 등 : 235,685백만원 ① 일반보험 회수금 : 184,014백만원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최근3년 평균회수율 ②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 51,671백만원 - 환변동보험 환수금 51,671백만원 ○ 임차보증금 회수 : 5,950백만원 - 사무실, 공관 및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 '16년 회수예상액 ○ 임직원대여금 회수 : 266백만원 - 임직원대여금 '16년 회수예상액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72,747백만원** ○ 수입보험료 : 614,893백만원 - '16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 채권회수대행 수입 : 143백만원 - 채권회수대행 목표(1,195백만원)×목표수수료율(12%) = 143백만원 ○ 신용정보판매 수입 : 2,917백만원 - 신용정보 판매 : 55,000건×건당평균판매수입(53천원) = 2,917백만원 ○ 헷지거래이익(보험금과 매칭) : 54,794백만원 ① 환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 54,794백만원 - '16년 예상지원실적(1.58조원)×예상사고율*(3.468%) = 54,794백만원 * 최근10년('05~'14) 환율변동성 반영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7계획(안)	1,052,549	▪ **관유물대여료 : 1,682백만원** - 본사사옥 임대수입 ▪ **이자수입 : 52,538백만원** - '17년 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1,227,719백만원)×목표수익율(1.59%)=19,521백만원 - '17년 비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90,000백만원)×목표수익율(1.22%)=1,098백만원 - '17년 국공채 등 채권 예상평잔(279,377백만원)×목표수익율(1.58%)=4,414백만원 - '17년 수익증권 예상평잔(1,592,779백만원)×목표수익율(1.76%)=27,505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254,534백만원** ○ 민간출연금 : 10,000백만원 - '17년 민간출연금 예상액 ○ 회수금 등 : 244,534백만원 ① 일반보험 회수금 : 191,706백만원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최근3년 평균회수율 ②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 46,612백만원 - 환변동보험 환수금 46,612백만원 ○ 임차보증금 회수 : 5,950백만원 - 사무실, 공관 및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 '17년 회수예상액 ○ 임직원대여금 회수 : 266백만원 - 임직원대여금 '17년 회수예상액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743,795백만원** ○ 수입보험료 : 695,029백만원 - '17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 채권회수대행 수입 : 150백만원 - 채권회수대행 목표(1,500백만원)×목표수수료율(10%) = 150백만원 ○ 신용정보판매 수입 : 1,800백만원 - 신용정보 판매 : 45,000건×건당평균판매수입(40천원) = 1,800백만원 ○ 헷지거래이익(보험금과 매칭) : 46,816백만원 ① 환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 46,816백만원 - '17년 예상지원실적(1.54조원)×예상사고율*(3.040%) = 46,816백만원 * 최근10년 환율변동성 반영
'18년	1,088,831	▪ '18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19년	1,123,937	▪ '19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20년	1,163,666	▪ '20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자체수입 증대방안

구 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 (보험료율 체계 개선) 장기적 수지균형을 고려한 요율체계 선진화 - 高손해율 종목 중심의 보험요율 조정 등 보험료 체계 개선을 통한 영업수지 개선 및 기금건전성 강화 ▪ (채권회수율 제고) 선택과 집중, 제도개선을 통한 채권회수 극대화 - 공적금융기관(ECAs, Paris Club 등)과 회수 공조체제 강화, 회수전담조직 확대 운영 등 채권관리 시스템 강화 ▪ (신규종목 리스크관리 강화) 신규제도 도입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시범운영 - 제도도입 1년차에 운영현황 및 손익분석 등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전면 도입여부 결정 등 Pilot Test 제도 운영
전망근거	▪ 종목별 예상지원실적 × 종목별 평균보험요율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평균회수율

정부내부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45,000	30,000	30,000	30000	-	△30,000	△100.0
○ 전입금	145,000	30,000	30,000	30,000	-	△30,000	△100.0

1. 수입개요

□ 수입 내용

○ 전입금 :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신흥시장 진출지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금

□ 근거

○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수입실적

□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 전입금	100,000	100,000	30,000	30,000	250,000	250,000	140,000	140,000	145,000	145,000	8.8	△9.7
(전년대비 증가율)	-	△33.3	△70.0	△70.0	733	733	△44.0	△44.0	3.6	3.6	-	-

○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 해당사항 없음

3. 수입계획

□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6계획	30,000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화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 신인도 제고
'17계획(안)	-	-
'18년	80,000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화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 신인도 제고
'19년	70,000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화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 신인도 제고
'20년	60,000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화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 신인도 제고

여유자금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481,599	2,342,933	2,342,933	2,249,621	2,249,621	△93,312	△4.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8,372	1,091,704	1,091,704	1,069,252	1,069,252	△22,452	△2.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00	359,373	359,373	140,000	140,000	△219,373	△61.0
○ 국공채매각대	70,000	105,179	105,179	-	-	△105,179	△100.0
○ 국채매각대	-	-	-	12,034	12,034	12,034	-
○ 공채매각대	-	-	-	95,156	95,156	95,156	-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533,227	786,677	786,677	933,179	933,179	146,502	18.6

1. 수입개요

□ 수입 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069,252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40,000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국채매각대 : 12,034백만원
- 국채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공채매각대 : 95,156백만원
- 공채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933,179백만원
- 수익증권 중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 근거

○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기금은 제31조 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실적

□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89,600	646,846	484,154	543,881	118,129	180,000	594,660	538,675	694,935	868,372	2.3	△7.6
(전년대비 증가율)	△28.1	△65.2	24.3	△15.9	△75.6	△66.9	403.4	199.3	16.9	61.2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27,300	741,000	269,716	381,000	835,283	354,113	264,294	575,000	402,103	10,000	-	-
(전년대비 증가율)	-	-	111.9	△48.6	209.7	△7.1	△68.4	62.4	52.1	△98.3	-	-
▪국공채매각대	358,000	50,299	131,179	70,000	389,923	762,538	225,531	110,000	177,772	70,000	-	-
(전년대비 증가율)	269.8	△88.9	△63.4	39.2	197.2	989.3	△42.2	△85.6	△21.2	△36.4	-	-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528,400	648,965	578,231	515,050	161,593	130,000	969,083	718,462	657,947	533,227	205.6	△4.8
(전년대비 증가율)	31.9	79.9	9.4	△20.6	△72.1	△74.8	499.7	452.7	△32.1	△25.8	-	-

○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구분	'11년	'12년	'13년	'14	'15
주요사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험사고 증가 대비 기금유동성 확보 등	무역보험사업 안정화에 따른 중장기 자금운용 증가 등	무역보험사업 안정화에 따른 중장기 자금운용 증가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험사고 증가 대비 기금유동성 확보 등	보험사고 축소 및 중장기 자금운용 비중 확대에 따른 운용자금 회수사유 감소

3. 수입계획

□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6계획	2,342,933	▪ '16년 만기도래 예상액
'17년계획(안)	2,249,621	▪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18년	2,290,493	▪ '18년 만기도래 예상액
'19년	2,511,587	▪ '19년 만기도래 예상액
'20년	2,738,801	▪ '20년 만기도래 예상액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99,908**	**108,035**	**108,035**	**110,459**	**110,459**	**2,424**	2.2
○ 인건비	53,858	58,081	58,081	61,832	61,832	3,751	6.5
○ 기타경비	36,695	40,447	40,447	39,337	39,337	△1,110	△2.7
○ 정보화경비	9,355	9,507	9,507	9,290	9,290	△217	△2.3

2. 기금관리 개요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3. 요구내용

□ 인건비 : 61,832백만원
○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 등

□ 기타경비 : 39,337백만원
○ 공공부분 지출효율화를 위한 최소금액 반영

□ 정보화경비 : 9,290백만원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 업 비

1. 총괄표

<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페이지(p)	2015결산	2016계획		2017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산업·중소기업		599,990	751,013	751,013	760,516	760,516	9,503
○ 무역및투자유치		599,990	751,013	751,013	760,516	760,516	9,503
1. 무역보험지원		599,990	751,013	751,013	760,516	760,516	9,503
1-1. 무역보험지원운영		579,798	701,822	701,822	716,924	716,924	15,102
▪ 1-1-1. 단기무역거래지원	31	221,279	215,917	215,917	181,278	181,278	△34,639
▪ 1-1-2.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38	133,638	191,836	191,836	303,206	303,206	111,370
▪ 1-1-3.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48	161,191	168,899	168,899	123,736	123,736	△45,163
▪ 1-1-4.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54	52,074	109,588	109,588	93,632	93,632	△15,956
▪ 1-1-5. 무역보험채권관리	58	7,677	7,857	7,857	8,117	8,117	260
▪ 1-1-6.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61	3,939	6,212	6,212	5,455	5,455	△757
▪ 1-1-7. 차입금 이자상환	64	-	1,513	1,513	1,500	1,500	△13
1-2. 무역보험환급금등		20,192	49,191	49,191	43,592	43,592	△5,599
▪ 1-2-1. 무역보험환급금등	67	20,192	49,191	49,191	43,592	43,592	△5,599

2. 세부사업 설명자료

단기무역거래지원(의무, 경상, 계속)

< 무역보험기금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 단기무역거래지원	221,279	215,917	215,917	181,278	181,278	△34,639	△16.0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단기(2년이내)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국의 비상위험 또는 수입자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단기무역거래지원 인수실적(149조 4,365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신용조사]	[인 수]	[보 상]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등급 부여 ▪ 수출입국 신용평가	▪ 인수심사 ▪ 한도책정 ▪ 증권발급 및보험료 수취	▪ 사고조사 ▪ 보상 심사 ▪ 보험금 지급(대위변제)

- 인수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보상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의 3(업무방법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별표3 의무적 지출 사업

□ 세부사업內 무역보험 지원종목

단기무역거래지원 (3개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수입보험

□ 주요 무역보험 지원종목

① 단기수출보험

- **제도개요** : 기업이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 등을 보상

- **지원효과** :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를 통한 수출촉진

【 단기수출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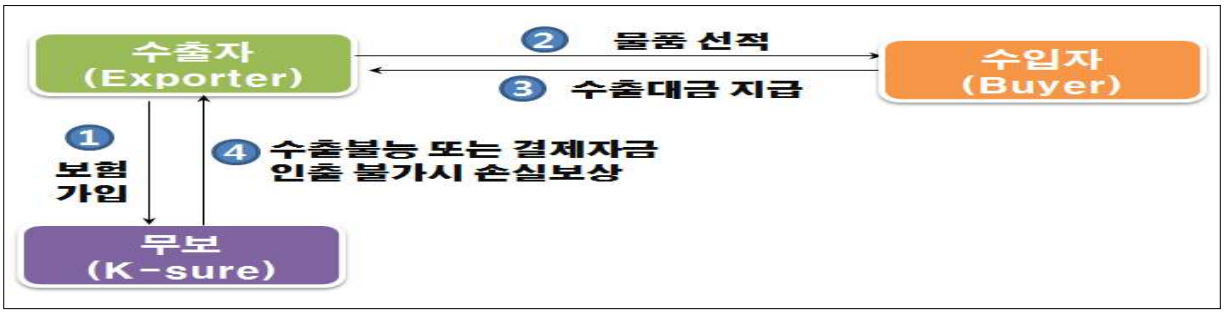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수출대금(수출대금 × 부보율)
부보율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 보험요율(수입자신용등급 및 결제기간 반영결정)

②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제도개요** :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제조·판매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상실위험으로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

- **지원효과** : 부품·소재 자체의 손해 및 부품·소재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함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수출 촉진 및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기초산업 육성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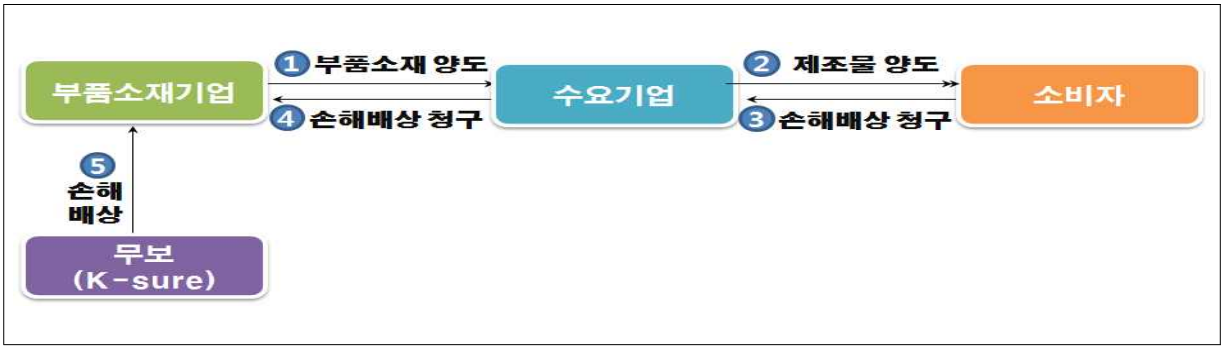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보유 기업 및 부품·소재 전문기업
가입시점	대상 부품·소재 납품 전
보험가액	보험가입대상 품목의 예상 매출액
보상한도	담보손해별 최대책정가능 보상한도 범위 내
보험료율	보험가입대상 품목의 고장률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험요율 산출

- 보험가입대상 및 요건

구분	보험가입대상 부품·소재	보험가입요건
신뢰성인증부품·소재 보유기업	신뢰성인증(평가) 부품·소재	-
	인증부품·소재와 동일한 설계, 공법 등으로 제조된 부품·소재	-
	인증받지 않은 부품·소재	인증부품·소재를 부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가능
부품·소재 전문기업	국내외 품질 관련 인증 보유 부품·소재	컨설팅 면제
	국내외 품질관련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부품·소재	컨설팅 필요

(참고) 용어설명

1) **부품·소재**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2) **부품·소재전문기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서를 받은 기업
3) **신뢰성** :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

③ 수입보험

- **제도개요** :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거나(수입자용), 금융기관이 자원 및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금융기관용)

- **지원효과** : 적기 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여 국제무역 활성화에 체계적으로 기여

【 수입보험(수입자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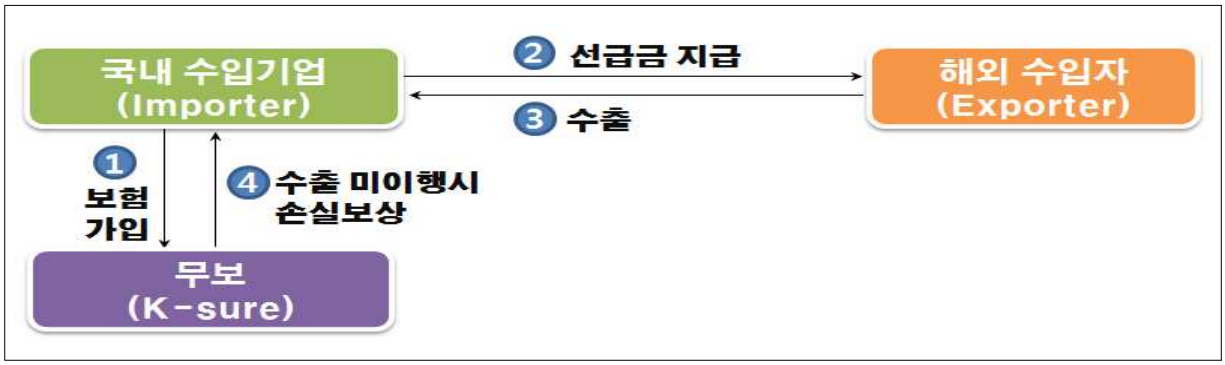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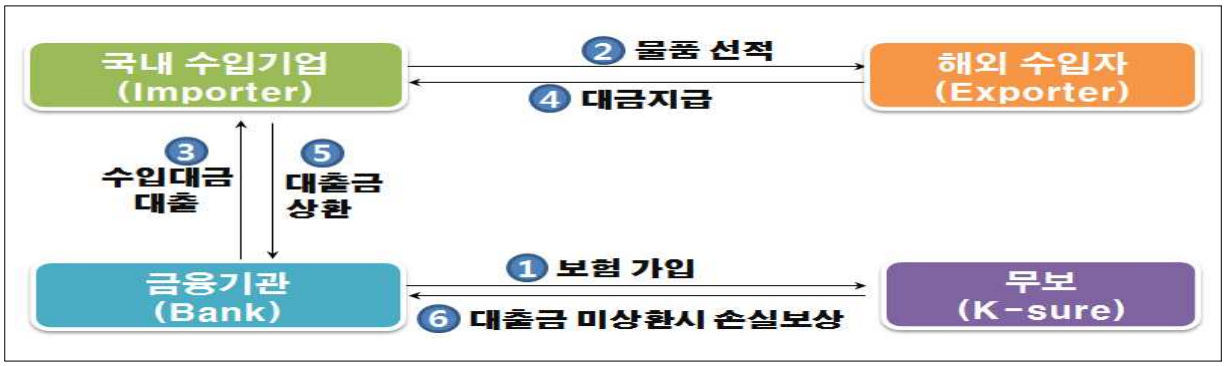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수입자용) 국내 원자재 등 수입기업 (금융기관용) 수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대상거래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 선적되는 자원·물품 수입거래 (금융기관용)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자원 또는 물품의 수입거래
보험가액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액 / (금융기관용) 대출원금
보상한도	국외기업 또는 국내기업 신용등급 및 결제조건에 따라 책정
보험료율	(수입자용) 국외기업 신용등급 및 결제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금융기관용) 국내기업 신용등급 및 결제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181,278만원

□ 산출근거

○ 단기수출보험

- 예상지원실적(172조 4,400억원) × 예상사고율*(0.096%) = 164,597백만원

* 최근 10년(‘06~’15) 단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단기수출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6~’15)
인수실적(a)	148,070,546	172,440,000	172,200,000	△240,000	1,365,151,585
보험금(b)	192,748	210,184	164,597	△45,587	1,460,221
사고율(b/a)	0.130	0.122	0.096	-	0.107

- 수입자 현지실사 : 110백만원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예상지원실적(30억원) × 예상사고율*(2.960%) = 89백만원

* 최근 10년(‘06~’15)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수입보험

- 예상지원실적(2조 500억원) × 예상사고율*(0.804%) = 16,482백만원

* 수입보험 도입 후(‘10~’15) 수입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단기무역거래지원		
▪ 예상사고율	0.124%	0.104%

□ 지원 필요성

○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촉진

○ 국내 부품·소재 수출기업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대외신뢰성 상실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 육성

○ 적기 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여 국제 무역 활성화에 체계적으로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218,883	215,917	181,278	181,278	△34,639	△16.0
▪ 단기무역거래지원 (산출근거)	218,883	215,917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81,27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81,27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34,639	△16.0
□ **비목**(합계)	221,279	215,917	181,278	181,278	△34,639	△16.0
○ 민간이전(320)	215,539	215,807	181,168	181,168	△34,639	△16.1
○ 재보험료(210)	5,647	-	-	-	-	-
○ 수입자 현지실사(220)	93	110	110	110	-	-

다.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1,795					
'16	2,159	2,159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1,654	1,813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1,621	2,013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9	1,605	2,02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20		2,03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 증가율 (%)	△2.8%	△1.4%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133,638	191,836	191,836	303,206	303,206	111,370	58.1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중장기(2년 이상) 거액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금융조달, 각종이행보증서 발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 인수실적(11조 8,441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신용조사]	[인 수]	[보 상]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등급 부여 ▪ 수출입국 신용평가	▪ 인수심사 ▪ 한도책정 ▪ 증권발급 및보험료 수취	▪ 사고조사 ▪ 보상 심사 ▪ 보험금 지급(대위변제)

- 인수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보상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의 3(업무방법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별표3 의무적 지출 사업

□ 세부사업內 무역보험 지원종목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7개 보험종목)			
▪ 중장기수출보험	▪ 해외사업금융보험	▪ 수출보증보험	
▪ 해외공사보험	▪ 해외투자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기반보험

① 중장기수출보험

- **제도개요 및 지원효과**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에서 수출기업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공급자신용),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여(구매자신용)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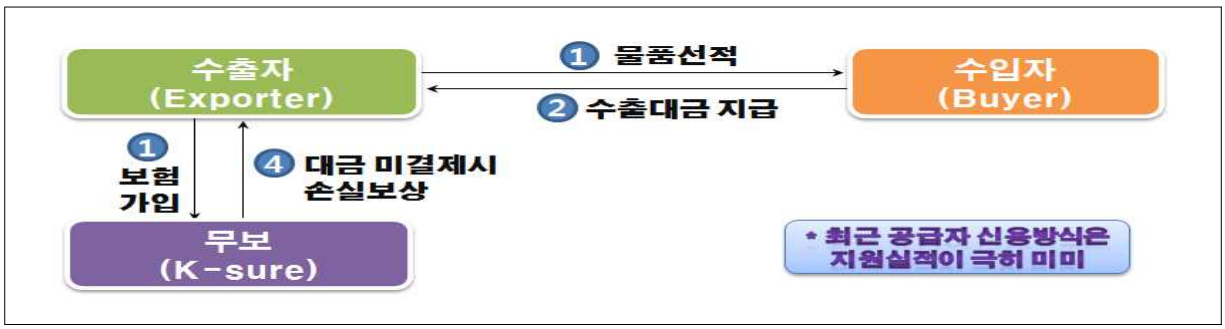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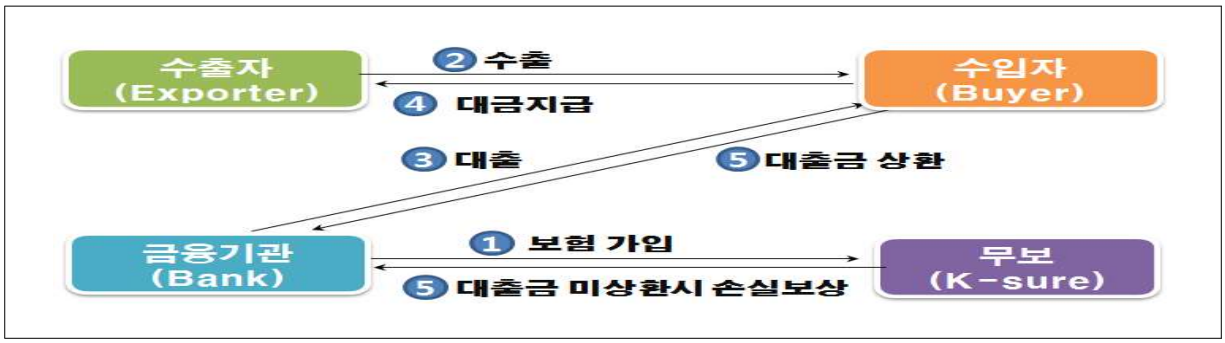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보험가액	연불원리금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100%이내에서 공사가 결정)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 적용

② 해외사업금융보험

- **제도개요** :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상환기간 2년 초과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지원효과** :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특정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해외사업금융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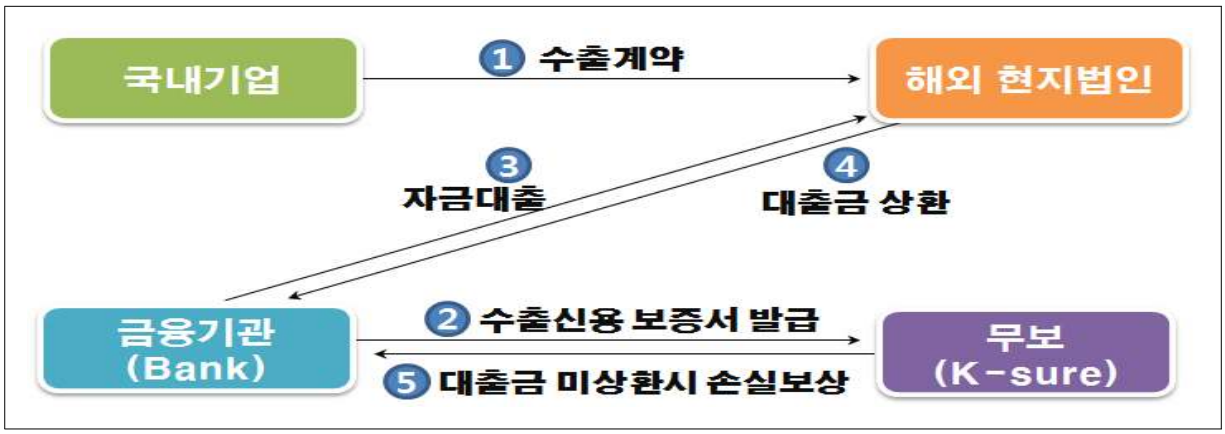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초과 해외사업(지분취득, 원재료 공급계약 등), 금융거래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보험가액	인출통지된 대출원리금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100%이내에서 공사가 결정)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 적용

③ 수출보증보험

- **제도개요** : 기업의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기타 물품 및 용역수출을 위한 계약 등에 수반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지원효과** :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

【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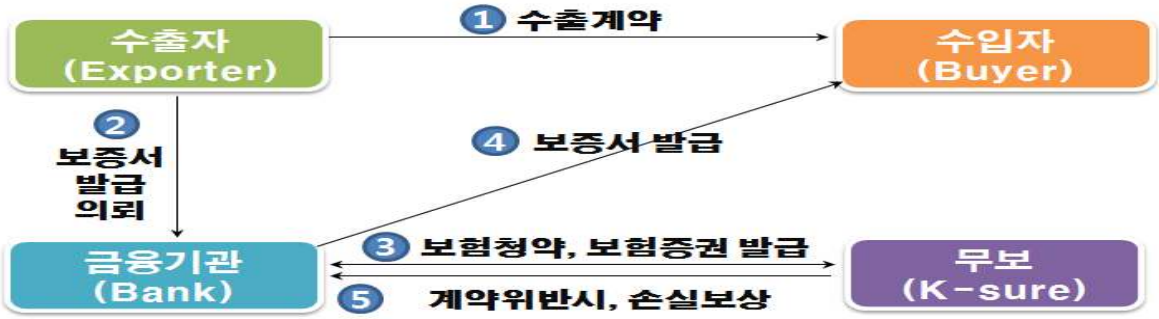

◆ 금융기관용 : 수출보증 관련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래방식

◆ 수출보증서의 종류
- AP-Bond :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선수금 환급 보증
- P-Bond : 수출(해외공사)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실금 지급 보증

【 수출보증보험(수출자용)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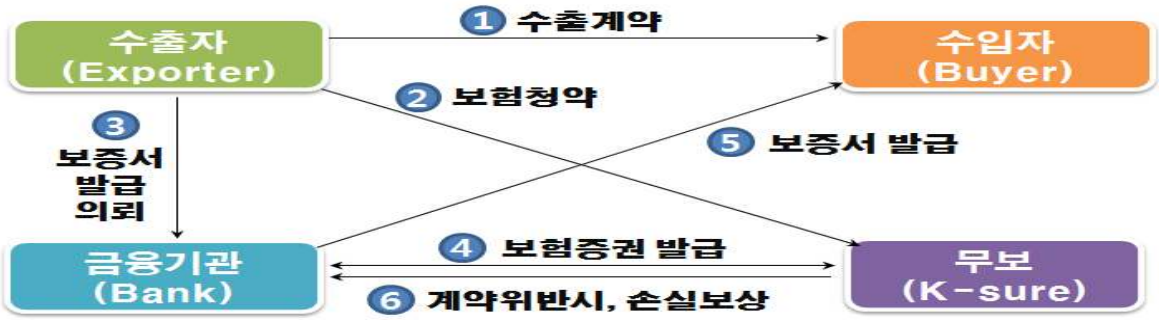

◆ 수출자용 :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금융기관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래방식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해외공사거래, 수출거래 및 기타 서비스 용역수출거래
보험가액	수출보증서상에 표시된 보증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100%이내에서 수출자신용 감안 결정)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에 수출자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④ 해외공사보험

- **제도개요** : 기업이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기타 물품 및 용역수출과 관련하여 결제조건이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방식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 등을 보상

- **지원효과** : 해외공사보험은 건설, 엔지니어링 수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동 수출이행을 위해 반입된 관련 장비의 손실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촉진 도모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건설 및 기술용역, 건설장비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보험가액	해외공사계약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대기업,중견기업95%이내, 중소기업97.5%이내)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공사대금 지급국가 등급 및 대금지급 기간 감안 결정

⑤ 해외투자보험

- **제도개요** :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해외투자에 따른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외투자 또는 금융계약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지원효과** : 해외투자는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 촉진

【 해외투자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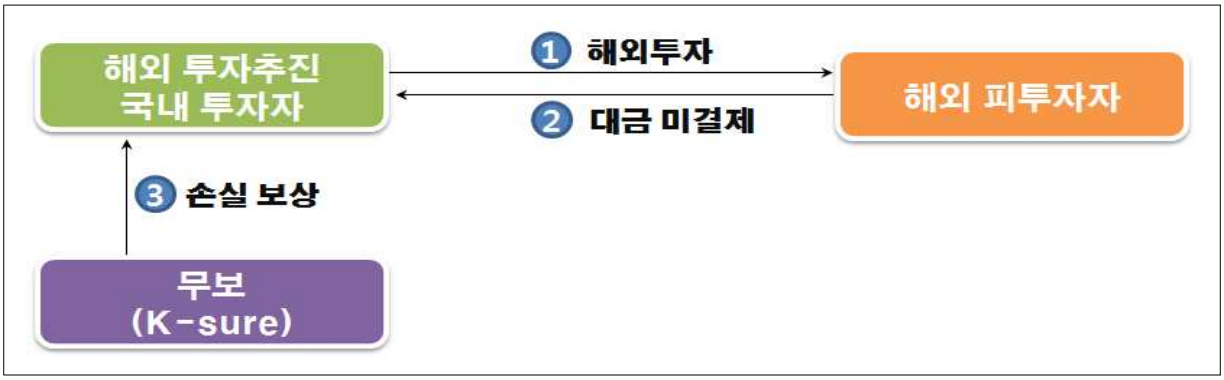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등에 대한 투자
담보위험	수용, 전쟁, 약정불이행, 송금 및 불가항력 위험
보험가액	해외투자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및 투자상대국 등급에 따라 결정

⑥ 서비스종합보험

- **제도개요** : 기업이 시스템통합 등 정보통신, 산업재산권 등 기술제공, 게임·영화 등 문화컨텐츠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서비스종합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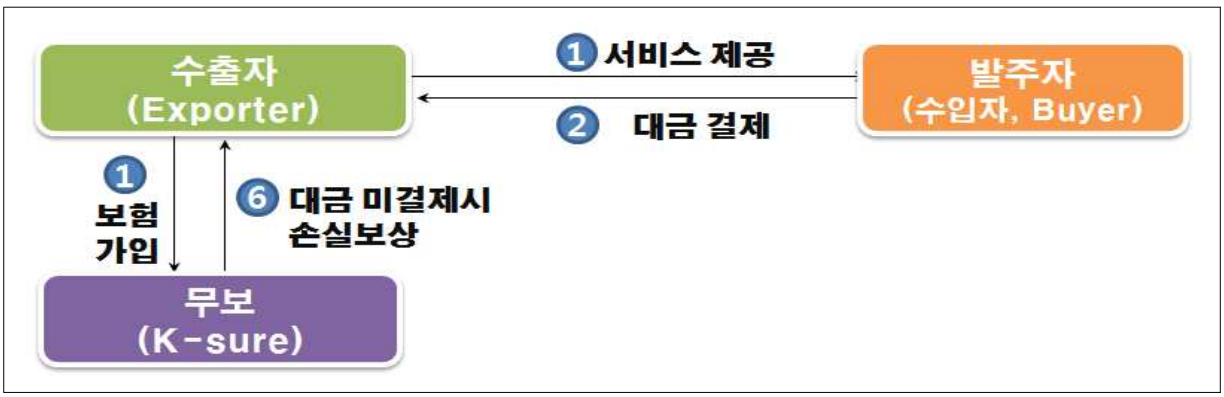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시스템통합, 기술, 컨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 수출
담보위험	비상위험, 신용위험
보험가액	서비스 수출 계약금액
부보율	대기업,중견기업95%이내, 중소기업97.5%이내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보험료	공사대금 지급 국가 등급 및 대금지급 기간에 따라 결정

⑦ 수출기반보험

- **제도개요** :수출기반 조성을 통해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설비(선박 등 운송설비 포함)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간 2년 초과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303,206백만원

□ 산출근거

○ 중장기수출보험

- 예상지원실적(11조 7,000억원) × 예상사고율*(0.431%) = 50,427백만원

* 최근 10년(‘06~’15) 중장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중장기수출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6~’15)
인수실적(a)	6,935,195	10,600,000	11,700,000	1,100,000	55,529,491
보험금(b)	69,661	42,082	50,427	8,345	226,421
사고율(b/a)	1.004	0.397	0.431	-	0.408

- 프로젝트 현지실사 : 160백만원
- 프로젝트 사업성분석 및 법률자문 : 105백만원

○ 수출보증보험

- 예상지원실적(1조 5,400억원) × 예상사고율*(15.96%) = 245,824백만원

* 최근 5년(‘11~’15) 수출보증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수출보증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최근5년 (‘11~’15)
인수실적(a)	1,595,736	2,650,000	1,540,000	△1,110,000	16,989,169
보험금(b)	54,755	145,867	245,824	99,957	1,294,011
사고율(b/a)	3.431	5.504	15.96	-	7.617

○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예상지원실적*(3,150억원) × 예상사고율**(0.279%) = 879백만원

* 해외공사보험(50억원), 서비스종합보험(3,100억원)

** 최근 10년(‘06~’15)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해외투자보험

- 예상지원실적*(1조 4,300억원) × 예상사고율*(0.125%) = 1,788백만원

* 최근 10년('06~'15) 해외투자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기반보험

- 예상지원실적*(3조 6,900억원) × 예상사고율**(0.109%) = 4,023백만원

* 해외사업금융보험(3조 6,400억원), 수출기반보험(500억원)

** 최근 10년('06~'15) 해외사업금융보험 누적사고율 등 반영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 예상사고율	1.040%	1.622%

□ 지원 필요성

○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플랜트·선박 등 자본재 수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확대

○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해외투자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133,638	191,836	303,206	303,206	111,370	58.1
▪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산출근거)	133,638	191,83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303,20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303,20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11,370	58.1
□ **비목**(합계)	133,638	191,836	303,206	303,206	111,370	58.1
○ 민간이전(320)	133,376	191,571	302,941	302,941	111,370	58.1
○ 사업성분석(210)	105	105	105	105	-	-
○ 프로젝트 현지실사(220)	157	160	160	160	-	-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2,626					
'16	1,918	1,91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2,234	3,032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2,189	1,909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9	2,168	2,00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20		2,104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 증가율 (%)	△4.7	2.3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161,191	168,899	168,899	123,736	123,736	△45,163	△26.7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출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취급 활성화를 도모
사업기간	1981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거래 인수실적(5조 6,291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신용조사]	[인 수]	[보 상]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등급 부여 ▪ 수출입국 신용평가	▪ 인수심사 ▪ 한도책정 ▪ 증권발급 및보험료 수취	▪ 사고조사 ▪ 보상 심사 ▪ 보험금 지급(대위변제)

- 인수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보상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의 3(업무방법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별표3 의무적 지출 사업

□ 세부사업內 무역보험 지원종목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2개 보증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도개요** :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지원효과** :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무역금융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출창출에 기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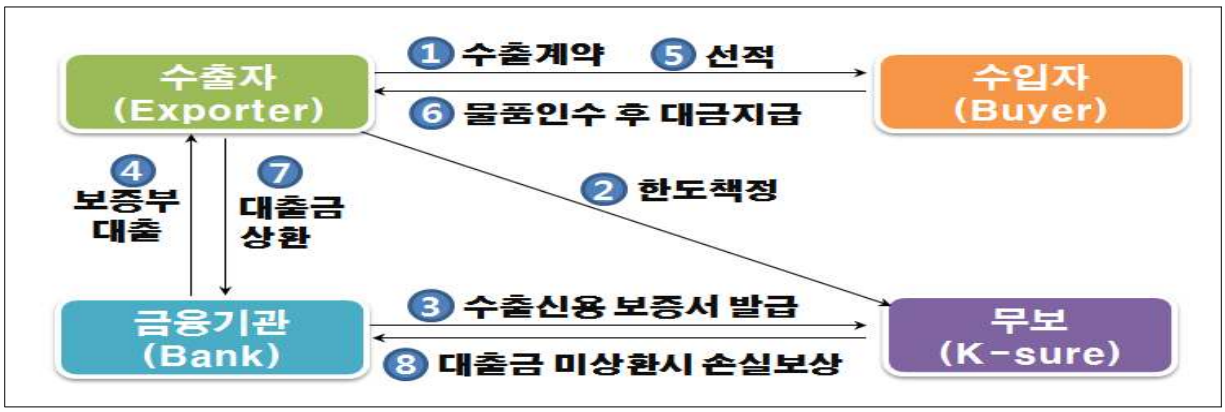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수출실적 有 : 회전보증) 수출물품 제조 등 자금부족 수출기업 (수출실적 無 : 개별보증) 수출물품 제조 등 자금부족 수출기업
가입시점	수출물품 선적前
보증대상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수출자금 대출, 무역어음 인수 등
보증기간	1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보증료	1년 기준으로 0.5%~2.5% 수준이며, 신용등급이 양호할수록 저렴 * 유망 중소수출기업은 20% 추가 할인 적용
보험금액	보증가액 × 부보율

②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

- **제도개요** :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 금융기관에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네고(Nego)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지원효과**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보증서를 담보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받음으로써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음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 상품구조 】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대상거래	(선적후)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 거래 (NEGO)결제기간 180일내의 무신용장 거래
보증한도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별 한도책정
담보위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보증금액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보험료 및 보증료	결제기간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123,736백만원

□ 산출근거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예상지원실적(1조 8,100억원) × 예상사고율*(6.321%) = 114,405백만원

* 최근 10년(‘06~’15)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누적사고율 등 반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6~’15)
인수실적(a)	2,654,694	2,380,000	1,810,000	△570,000	26,872,153
보험금(b)	145,303	156,536	114,405	△42,131	1,523,012
사고율(b/a)	5.473	6.577	6.321	-	5.668

- 수출중소기업 현지실사 : 133백만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예상지원실적(2조 2,600억원) × 예상사고율*(0.407%) = 9,198백만원

* 최근 10년(‘06~’15)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누적사고율 등 반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6~’15)
인수실적(a)	2,974,360	2,630,000	2,260,000	△370,000	20,209,293
보험금(b)	15,804	12,230	9,198	△3,032	77,815
사고율(b/a)	0.531	0.465	0.407	-	0.385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중소기업수출 신용보증지원		
▪ 예상사고율	3.369%	3.037%

□ 지원 필요성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의 신용도를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산업기반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161,191	168,899	123,736	123,736	△45,163	△26.7
▪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산출근거)	161,191	168,899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23,73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23,73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45,163	△26.7
□ **비목**(합계)	161,191	168,899	123,736	123,736	△45,163	△26.7
○ 민간이전(320)	161,106	168,766	123,603	123,603	△45,163	△26.8
○ 수출중소기업 현지실사(220)	85	133	133	133	-	-

다.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2,226					
'16	1,689	1,689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1,701	1,237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1,667	1,543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9	1,650	1,474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20		1,411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 증가율 (%)	△7.2	△4.4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52,074	109,588	109,588	93,632	93,632	△15,956	△14.6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수출기업의 환율변동 리스크 헷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율 가격을 수출계약시점에 고정하여 이후 환율하락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00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가격변동보험 인수실적(1조 2,262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환율 등 가격변동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앞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인수한도책정]	[청약 및 증권발급]	[손익정산]
▪ 인수한도책정 ▪ 약정체결	▪ 청약(결제일자지정) ▪ 증권발급 및 보험료 수취	▪ 보험금 지급 또는 환수금 수취

- 인수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보상 :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무역보험법 제53조의 3(업무방법서),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별표3 의무적 지출 사업

○ 환변동보험

- **제도개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환변동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

- **지원효과**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

【 환변동보험 상품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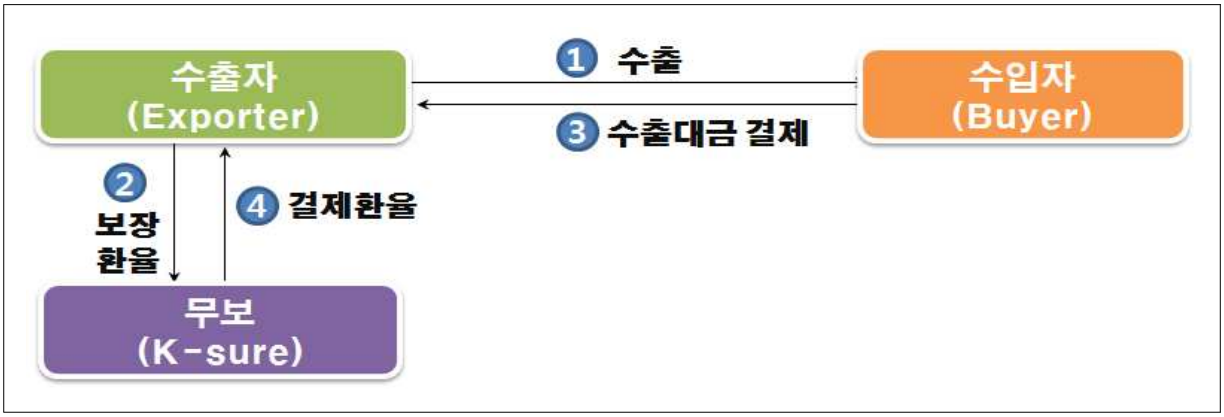

- 주요 계약사항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국내 수출기업
가입시점	수출채권 또는 수입채권 발생시
보험가액	보험계약자가 무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제일별 외화금액
인수한도	수출(수입)실적 이내에서 기업신용도, 실헤지 수요 등을 감안 책정
보험료율	수출자·수입자 신용등급 및 결제기간을 반영하여 보험료율 산출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93,632백만원

□ 산출근거

○ 환변동보험 : 46,816백만원

- 예상지원실적(1조 5,400억원) × 예상사고율*(3.040%) = 46,816백만원(보험금)
  * 최근10년 환율변동성 6.08% × 50%

- 예상지원실적(1조 5,400억원) × 예상사고율*(3.040%) = 46,816백만원(보험금)
  * 최근10년 환율변동성 6.08% × 50%

【 환변동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인수실적(a)	1,226,224	1,580,000	1,540,000	△40,000
보험금(b)	18,306	54,794	46,816	△7,978
헷지거래손실(c)	33,768	54,794	46,816	△7,978
사고율(b/a)	1.493	3.468	3.040	-
손실율(c/a)	2.754	3.468	3.040	-

【 환변동보험 손익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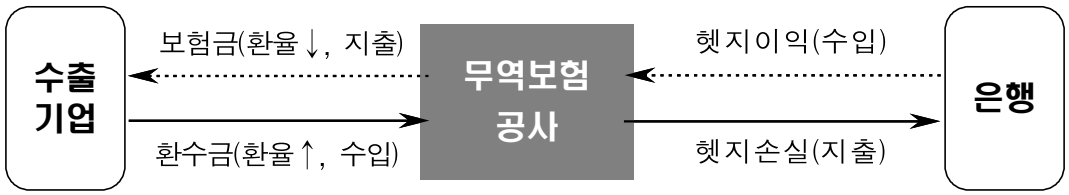

◆(환율 하락) 은행으로부터 헷지이익을 받아 수출기업에게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 수출기업으로부터 환수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헷지 대금 지급
◆수출자의 헷지거래를 공사가 다시 금융기관에 헷지하는 구조로서 보험금과 헷지거래이익, 환수금과 헷지거래손실은 중장기적 수지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정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가격변동리스크 헷지지원		
▪ 예상사고율	3.468%	3.040%

□ 지원 필요성

○ 환율 등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저하 및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중장기수출금융 공여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52,074	109,588	93,632	93,632	△15,956	△14.6
▪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산출근거)	52,074	109,58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93,632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93,632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5,956	△14.6
□ 비목(합계)	52,074	109,588	93,632	93,632	△15,956	△14.6
○ 민간이전(320)	52,074	109,588	93,632	93,632	△15,956	△14.6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1,262					
'16	1,096	1,09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7	1,163	93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8	1,140	1,137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9	1,128	1,15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20		1,18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연평균 증가율 (%)	△2.8	2.0				

무역보험채권관리(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무역보험채권관리	7,677	7,857	7,857	8,117	8,117	260	3.3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보험금 지급,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국외 또는 국내채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의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 수지 개선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무역보험 사고채권 회수실적(1,815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후 공사채권 회수위한 비용 지출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재산조사·채권보전조치]	[등급분류 및 회수]	[상각 및 종결]
▪ 자체조사 ▪ 국토교통부 지적 전산망 조회의뢰	▪ 회수실익여부 파악 및 등급분류 ▪ 채권추심, 소송 등 회수활동	▪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상각 ▪ 채권관리 종결

- 관리방향검토 : 회수가능성 기준으로 A~D등급 구분, 통합도산법관련 채무자는 F등급으로 분류 ⇒ 공사자체관리(A~B), 채권추심위임(C~D)
- 자체회수 및 채권추심 위임 : 임의변제, 소송을 통한 강제회수, 채권추심 활동을 통한 구상금 회수
- 상각 및 종결 : 전액회수 또는 상각처리된 채권에 대한 채권관리 종결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8,117백만원

□ 산출근거

○ 소송·강제집행 및 채권회수 관련 추심비용

- ‘17년 일반보험 예상회수금 수입(191,706백만원) × 예상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3.6%)* = 6,991백만원

* 최근 5년 평균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

【 채권회수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 (B)	증감 (B-A)
회수금(a)	181,490	184,014	191,706	7,692
채권회수비용(b)	7,549	6,704	6,991	287
소요비율(b/a)	4.2	3.6	3.6	-

○ 거액 사고건 소송비용 및 사고조사비용 : 1,126백만원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무역보험채권관리		
▪ 회수비용 소요비율	3.6%	3.6%

□ 지원 필요성

○ 보험금 지급 또는 보증채무 관련 공사의 국내외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국부의 부당한 유출 방지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수지 개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7,677	7,857	8,117	8,117	260	3.3
▪ 무역보험채권관리 (산출근거)	7,677	7,857 (예상회수금×예상비용소요비율)	8,117 (예상회수금×예상비용소요비율)	8,117 (예상회수금×예상비용소요비율)	260	3.3
□ **비목**(합계)	7,677	7,857	8,117	8,117	260	3.3
○ 운영비(210)	7,549	7,711	7,998	7,998	287	4.3
○ 채권추심(220)	128	146	119	119	△27	△18.5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99					
'16	79	79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7	91	81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8	89	76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9	88	76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20		77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연평균 증가율 (%)	△2.8	△0.6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B-A)	%
○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3,939	6,212	6,212	5,455	5,455	△757	△12.2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무역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지원 및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04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5년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 판매실적(17억원)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채권회수대행]

○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공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 업무근거 :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 이용자격 : 해외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 은행 등

① 상담 및 서류접수 ⇒ ② 추심위임 확인 ⇒ ③ 추심활동 및 내역통보 ⇒ ④ 성공수수료 정산 ⇒ ⑤ 채권추심위임 종결

[신용정보판매]

○ 공사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업무근거 :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 중소(견)기업에 대한 조사수수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견)기업할인율을 적용, 기본단가에서 50% 할인

① 수출자 신용조사 신청 ⇒ ② 조사기관 조사의뢰 ⇒ ③ 조사보고서 접수 ⇒ ④ 조사보고서 입력 ⇒ ⑤ 입력내용 확인(등급평가) ⇒ ⑥ 정보제공 ⇒ ⑦ 수수료 수취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5,455백만원

□ 산출근거

○ 채권회수대행관련 추심비용 : 150백만원
- 채권회수대행 목표 금액(1,500백만원) × 평균수수료율(10%) = 150백만원

○ 수입자 신용정보 구입 등 : 5,305백만원
- 신용정보 구입 : 78,000건 × 건당평균구입비용 62천원 = 4,836만원
- DB구축및관리 : 469백만원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 신용정보 구입건수·단가	70,000건, 평균 80천원	78,000건, 평균 62천원

□ 지원 필요성

○ 무역보험에 부보하지 않은 해외 미회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대행을 통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부당한 국부유출 방지

○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업무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해외 신용정보 고가매입 및 저가판매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3,939	6,212	5,455	5,455	△757	△12.2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산출근거)	3,939	6,212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5,455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5,455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757	△12.2
□ **비목**(합계)	3,939	6,212	5,455	5,455	△757	△12.2
○ 운영비(210)	3,939	6,212	5,455	5,455	△757	△12.2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74					
'16	62	62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17	68	55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18	67	66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19	66	67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20		69	신용정보구입 수량×구입단가			
연평균 증가율 (%)	△2.8	2.7				

차입금이자상환(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
○ 차입금이자상환	-	1,513	1,513	1,500	1,500	△13	△0.9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무역보험기금의 유동성 확충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확대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09년～현재
총사업비	13,515억원('15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차입금 한도 설정액 5,000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업 집행절차

[대규모 기금소요 발생 예상]	[내·외부 의결 및 승인]	[차입(채권발행) 및 상환]
▪ 거액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 지급 예상	▪ 차입 및 채권 발행과 상환계획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 차입(채권발행) ▪ 원리금 상환

- 급격한 기금소요액 발생 예상시 내부적 절차(이사회 심의·의결)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 후 원리금 상환
- 업무근거 : 무역보험법 제34조(기금의 차입),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1,500백만원

□ 산출근거

○ 차입금 이자 : 1,500백만원

- 차입금 한도 예상평잔(2,500억원) × 예상이자율(1.98%)* × 30% = 1,500백만원

* ‘15년말 5년 만기 예보채 유통수익률 준용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차입금이자상환		
▪ 차입금예상이자율	2.42%	1.98%

□ 지원필요성

○ 예기치 못한 긴급한 보험금 등 지급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유동성 확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1,513	1,500	1,500	△13	△0.9
▪ 차입금이자상환 (산출근거)	-	1,513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500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500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3	△0.9
□ **비목**(합계)	-	1,513	1,500	1,500	△13	△0.9
○ 상환지출(510)	-	1,513	1,500	1,500	△13	△0.9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22					
'16	15	15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7	20	15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8	20	15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19	19	15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20		15	예상차입평잔 ×예상이자율			
연평균 증가율 (%)	△2.8	-				

무역보험환급금등(의무, 경상, 계속)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B-A)	%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무역보험환급금등	20,192	49,191	49,191	43,592	43,592	△5,599	△11.4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2
* 담당자 : 기획담당본부장(조남용), 전략기획부장(이무혁), 기금예산팀장(김정탁)

가. 사업개요

○ 보험관계의 해지·해제 및 무사고 등으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 등

□ 사업 집행절차

[보험인수 및 보험료 수취]	[환급사유발생 및 환급심사]	[환급처리]
▪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수취	▪ 보험기간 단축, 감액 등 환급 사유 발생 ▪ 보험료환급청구서 내용심사	▪ 보험계약자의 귀책여부 심사 후 환급처리

-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환급보험금액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 환급 불가
- 보험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 해제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실효, 해지의 경우에는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환급보험료

나.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 43,592백만원

□ 산출근거

○ 보험료환급금 : 43,592백만원

- 예상보험료(6,950억원) × 예상환급율*(6.3%)= 43,592백만원

* 최근 3년 환급율(6.3%)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계획	’17요구
□ 무역보험환급금등		
▪예상환급율	최근 3년 환급율(8.0%)	최근 3년 환급율(6.3%)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20,192	49,191	43,592	43,592	△5,599	△11.4
▪ 무역보험환급금등 (산출근거)	20,192	49,191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43,592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43,592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5,599	△11.4
□ **비목**(합계)	20,192	49,191	43,592	43,592	△5,599	△11.4
○ 예비비및기타(710)	20,192	49,191	43,592	43,592	△5,599	△11.4

라.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383					
‘16	492	492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17	353	436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18	346	429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19	343	442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20		455	예상보험료 ×예상환급율			
연평균 증가율 (%)	△2.8	△1.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보험기금 정부출연을 통한 수출지원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강화 병행을 통한 기금건전성 제고 등 중·장기적 수지안정 도모

- 지속적 수지개선을 통한 중기적 수지안정 도모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거액 보험사고 방지 및 지속적, 예방적 위험관리 도모
- 보험요율체계의 재정비, 회수금·이자수입의 제고를 통한 수지개선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8,488					
'16	7,510	7,510	예상인수실적 ×예상사고율 등			
'17	7,285	7,605	예상인수실적 ×예상사고율 등			
'18	7,139	7,180	예상인수실적 ×예상사고율 등			
'19	7,068	7,258	예상인수실적 ×예상사고율 등			
'20		7,351	예상인수실적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 증가율 (%)	△4.5	△0.5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무역보험법 제1조, 제3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2조, 제35조, 제36조, 제53조

○ 추진경위

- '68년 수출보험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중요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서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기 시작
- '69년 수출보험제도 시행이후 고유업무로서 공사의 국내외 채권회수업무 개시
- '92.7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
- '03.9월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04.1월 해외미부보 수출채권회수대행 실시(채권회수대행사업)
- '04.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용정보판매 실시(신용정보판매사업)
- '10.4월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한 위험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제정, 목적 및 공사명칭을 변경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 합계	9,275	9,458	8,979	8,488	7,510
▪단기무역거래지원	1,771	1,793	2,179	1,795	2,159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2,759	3,132	2,077	2,626	1,918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2,813	2,534	2,119	2,226	1,689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1,390	1,429	1,896	1,262	1,096
▪무역보험채권관리	82	72	72	99	79
▪채권회수대행·신용정보판매	46	60	72	74	62
▪차입금이자상환	108	94	38	22	15
▪무역보험환급금등	306	343	526	383	49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9,458 ( )	( )	409 ( )	9,867 ( )	8,431 ( )	( )	1,436 ( )
'14년	8,979 ( )	( )	201 ( )	9,180 ( )	8,997 ( )	( )	183 ( )
'15년	8,488 ( )	( )	( )	8,488 ( )	6,000 ( )	( )	2,488 ( )

(3) '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백만원)

'15결산	'16년			집 행('16.11월말)	
	'16 정부안	'16 국회증감	'16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599,990	751,013	-	1,111,013	744,593	67.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 관 명	시기	지적·평가내용
기획재정부	‘15년	‘14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기획재정부	‘15년	‘15년 기금존치평가 :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4년	‘14년 기금평가(대형부문) 우수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평가(대형부문) 우수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존치평가 :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 및 다른 경쟁국의 공적수출보험 운영 등을 감안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2년	‘12년 기금평가(대형부문) 양호, ’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11년	‘11년 기금평가(대형부문) 7위
기획재정부	‘10년	‘10년 기금존치평가 : 국민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 및 다른 경쟁국의 공적수출보험 운영 등을 감안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09년	‘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 우수, ’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08년	’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1위(연·기금 부문)
기획재정부	’08년	‘08년 기금평가 1위(자산운용부문)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07년	‘07년 기금존치평가 : 수출촉진, 수출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의 존치 필요성 인정
기획예산처	’07년	’07년 기금평가 1위 (자산운용부문, 사업운영부문 1위)
기획예산처	’07년	’07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3위(연·기금 부문)
기획예산처	’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1위(연·기금 부문), ‘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기획예산처	’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1위(연·기금 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05년	중소기업지원 우수단체 대통령표창 수상
감사원	’05년	감사원 주관 공적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산업자원부	’04년	‘04년 산업자원부 수요자 정책다면평가 : 41개 정책과제중 1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연구원)	’04년	‘04년 윤리경영평가(46개 공기업, 220개 민간기업) : 작업장, 고객 부문의 윤리경영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03년	’03년 기금평가 : 46개 기금중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1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연구원)	’03년	‘03년 윤리경영조사 : CEO, 작업장, 지역사회 부문의 윤리경영실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수출입 및 금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재 66개국 77개 기관에서 운영

○ 운영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국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사업으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전담 공기업 운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 다수국가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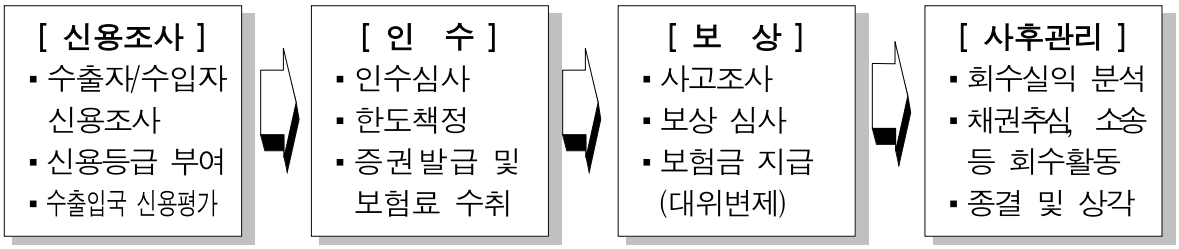

5. 참고자료

○ 별첨 1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2 : 한국무역보험공사 현황 및 지원제도 개요

< 별 첨 1 >

무역보험법 관련 조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별 첨 2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현황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92년 설립 이후 대외 수출거래를 담보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정책금융지원기관임

1. 무역보험공사 설립근거

□ 설립근거 / 관리주체 : 무역보험법 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sure.or.kr

2. 무역보험 제도 도입경과

□ 무역보험은 '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수은 등에서 제도 운영

□ '92.7월 무역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10.7월, 무역보험공사 명칭 변경)를 설립·운영하여 무역보험은 비약적으로 발전

○ 특히, IMF·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무역보험 지원 대폭 확대하여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15년 세계 수출순위 6위 달성에 기여

* 무역보험 이용률(%) : ('92) 3.0→ ('06) 17.5→ ('08) 20.8→ ('13) 24.1→ ('15) 22.0
·해외 주요국의 무역보험 이용률('14,%) : (독일) 11, (일본) 10, (캐나다) 18

* 무역보험 지원(조원) : ('92) 2 → ('06) 83 → ('08) 130 → ('13) 204 → ('15) 168

3. 무역보험 기능 및 특징

① 수출 후 대금회수 불가시 수출자에게 손실보상→ 안정적인 수출활동 전념 유도
② 금융기관 담보 요구조건 완화→ 중소기업의 유동성 및 신속한 자금 지원 유도
③ 무역보험을 통한 간접수출 지원→ 정부의 직접 수출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 회피
④ 기업에게 수입자 신용정보 제공 → 신흥시장 등 수입선 다변화, 사고방지 효과제공

□ 중소중견기의 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은 흑자시현

* 기업규모별 사고율('10~'15, (보험금/인수실적)×100) : (대기업)0.2%, (중소중견)1.2%
· '92년~'15년까지의 영업수지(억원) : (대기업) +21,206, (중소기업) -19,590

무역보험제도 개요

◇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or K-sure))**

□ 무역보험의 대내외 위험 지원범위

□ 무역보험 활용시 장점

수출자	·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수입자	· 무신용장 거래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 · 수출기업의 수출계약 이행 보강 · 수입자금 조달
금융기관	· 수출입자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 위험 제거 · BIS비율 산정시 위험 가중치 0~10%로 낮게 적용 가능 · 대규모 융자 지원이 가능

참고 1 유형별 무역보험 지원상품 설명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사에서 수출대금 회수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구분】		【지원 요구사항】	【지원 서비스】
1	수출상담, 계약단계	· 불안한 수입국 사정 · 수입자 신용문제	· 수입자 신용조사
		· 생산제품(부품·소재) 신뢰성문제	·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 비상·수입자 파산 등 수출불능 위험문제	· 단기수출보험(선적前) · 중장기수출보험(선적前)
2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조달단계	· 수출(수주)계약 보증서 발급 문제	· 수출보증보험
		·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 문제	· 중장기수출보험
		· 해외 사업 관련 금융조달 문제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투자보험
		· 서비스사업 진출 관련 금융조달 애로	· 서비스종합보험
3	원자재조달 제조단계	· 수출계약 체결 후 원자재, 완제품 및 수출물품 생산 등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 선적前 수출신용보증
		· 해외 중요 원자재(원유, 구리 등) 구매자금 문제	· 수입보험
4	선적후 단계	· 상품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문제	· 단기수출보험(일반상품)
		· 대금회수시까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
		· 외상거래시, 대금결제기간 동안의 자금부족 등 유동성 문제	· 신용보증(선적後·Nego)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5	대금회수	· 사고발생에 따른 대금회수 문제 · 수출채권 회수가 어려움	· 보험금 지급(보상) · 채권 추심 대행

참고 2 무역보험 종목별 주요내용 설명

종 목		주 요 내 용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상품선적 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未회수시, 손실을 보상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부품·소재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	중요자원 등 수입을 위해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융제공 후 원리금을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이자율 변동보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이익은 환수)
	해외사업 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사업에 대해 필요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자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한 후 수출자의 수출불이행 등에 따른 채무이행 손실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기업이 산업설비수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방식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출목적 투입장비에 대한 권리상실시,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 또는 해외투자에 따른 신용공여 금융계약 체결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
	서비스 종합보험	기업이 IT, 기술, 문화컨텐츠,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관광, 운송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보상
	수출기반보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해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의 설비도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 체결 후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신용보증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환어음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무를 무보가 연대보증
환변동보험		수출기업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사전 수출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시에는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 단기성 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 거래(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출)
* 중장기성 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수출계약 거래(플랜트, 해외 공사 등 수출)

참고 3 무역보험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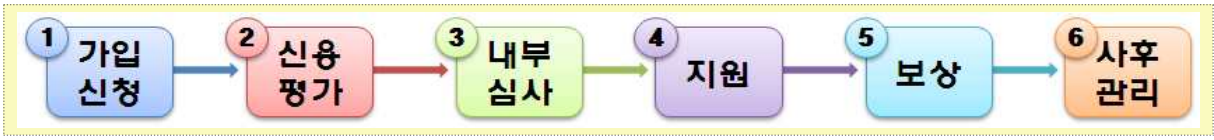

【①신청단계】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후 무역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의 사이버영업점을 통하여 보험 신청이 가능

< 사이버영업점 회원 가입절차 >

①회원사 및 사용자 가입신청 : 무보 홈페이지(www.ksure.or.kr) 접속→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신청서류 팩스송부(02-399-7046 / 02-6234-1406)

②무보 가입승인 : 신청서류 확인, 온라인 가입확인 후 승인결과 문자메시지(SMS) 전송

③사이버영업점 접속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사이버영업점 접속 후 공인 인증서 등록

【②신용평가】 해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해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무보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 부여

< 신용평가 > 무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

①국외기업 : 신청기업에 해당 국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4주 소요)

②국내기업 : 최근 3년의 재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 (3일 이내 제공)

* 신용평가등급 : A·B·C·D·E·F(F이전은 정상인수)·G(제한인수)·R(인수불가)

【③심사단계】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내부절차(인수심사, 한도책정, 보험증권 발급 등)를 거쳐 1주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통보

【④지원단계】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상품 수출 지원

【⑤보상단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2개월내 보험금 지급

< 절차 > 사고발생시 기업이 통지(1개월내)→ 보험금 청구(통지일이후 1개월 이후) →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보험금 지급

【⑥사후관리】 채권추심, 소송 등 회수활동 등을 통해 보험금 회수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2,098,603	2,517,195	2,517,195	2,461,195	2,431,195	△86,000	△3.4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91,410	1,031,446	1,031,446	1,232,487	1,232,487	201,041	19.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327,291	327,291	89,656	59,656	△267,635	△81.8
○국공채매입	123,985	122,038	122,038	-	-	△122,038	△100.0
○국채매입	-	-	-	14,479	14,479	14,479	-
○공채매입	-	-	-	106,183	106,183	106,183	-
○기타유가증권매입	883,208	1,036,420	1,036,420	1,018,390	1,018,390	△18,030	△1.7

1. 사업개요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정기예금 등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특정금전신탁 등

○ 국공채매입 : 국공채 등

○ 기타유가증권매입 : 수익증권 등

2. 요구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1,232,487백만원
-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59,656백만원
-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

○ 국채매입 : 14,479백만원
- 국채 등 매입

○ 공채매입 : 106,183백만원
- 공채 등 매입

○ 기타유가증권매입 : 1,018,390백만원
- 수익증권 등 매입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 (누계)	2016계획			2017계획(안)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21,365,920	1,033,310	1,033,310	22,399,230	1,052,549	23,451,779	1,052,549	
o 출연	4,298,250	60,000	60,000	4,358,250	10,000	4,368,250	10,000	
- 정부출연	4,062,250	30,000	30,000	4,092,250	-	4,092,250	-	
- 민간출연	236,000	30,000	30,000	266,000	10,000	276,000	10,000	
o 차입금	-	-	-	-	-	-	-	
- 기타민간	-	-	-	-	-	-	-	
o 운영수입	16,077,138	973,310	973,310	17,050,448	1,042,549	18,092,997	1,042,54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452,486	672,747	672,747	9,125,233	743,795	9,869,028	743,795	
- 정부내부이자수입	399,501	-	-	399,501	-	399,501	-	
- 민간이자수입	1,183,939	56,508	56,508	1,240,447	52,538	1,292,985	52,538	
- 기타	6,041,212	244,055	244,055	6,285,267	246,216	6,531,483	246,216	
o 평가계정	990,532	-	-	990,532	-	990,532	-	
나. 사용액	20,014,453	918,207	1,021,544	21,035,997	1,040,819	22,076,816	1,040,819	
o 경상지출	14,914,223	751,013	751,013	15,665,236	760,516	16,425,752	760,516	
o 기타관리비	1,406,782	108,035	108,035	1,514,817	110,459	1,625,276	110,459	
o 평가계정	3,693,448	59,159	162,496	3,855,944	169,844	4,025,788	169,844	
순조성 (가-나)	1,351,467	115,103	11,766	1,363,233	11,730	1,374,963	11,730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실적	2016말 계획		2017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2,880,993	2,725,234	3,055,472	3,261,588	206,116
2. 투자자산	574,794	957,024	568,325	483,191	△85,134
3. 유형자산	100,167	86,484	100,167	100,167	-
4. 무형자산	6,809	9,165	6,809	6,809	-
5. 기타자산	342,732	334,678	354,860	409,371	54,511
자산총계	**3,905,496**	**4,112,585**	**4,085,633**	**4,261,126**	**175,493**
1. 유동부채	35,875	28,869	36,413	36,959	546
2. 고정부채	1,111,453	2,258,148	1,149,839	1,158,140	8,301
3. 기타부채	1,406,701	61,628	1,536,148	1,691,064	154,916
부채총계	**2,554,029**	**2,348,645**	**2,722,400**	**2,886,163**	**163,763**
1. 기본순자산	1,780,135	1,780,135	1,780,135	1,780,135	-
2. 적립및잉여금	△453,734	△37,073	△441,968	△430,238	11,730
3. 순자산조정	25,066	25,066	25,066	25,066	-
기금총계	**1,351,467**	**1,763,940**	**1,363,233**	**1,374,963**	**11,730**
부채와 기금총계	**3,905,496**	**4,112,585**	**4,085,633**	**4,261,126**	**175,493**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실적	2016년말 계획		2017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3,184,336	3,242,062	3,614,403	3,808,354	193,951
2. 사업비용	3,291,162	3,084,953	3,557,512	3,698,386	140,874
3. 사업총이익(1-2)	△106,825	157,109	56,891	109,968	53,077
4. 사업관리비	97,429	105,650	106,045	108,686	2,641
5. 사업이익(3-4)	△204,254	51,459	△49,154	1,282	50,436
6. 사업외 수익	9,605	5,952	2,171	1,699	△472
7. 사업외 비용	1,251	2,307	1,251	1,251	-
8. 경상이익	△195,900	55,104	△48,234	1,730	49,964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95,900	55,104	△48,234	1,730	49,964
12. 법인세비용	-	-	-	-	-
13. 당기순이익	△195,900	55,104	△48,234	1,730	49,964

4. 보유자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 잔액	2016년 계획			2017년계획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가. 금융자산	2,997,191	2,139,473	2,034,580	3,102,083	2,364,854	2,249,621	3,217,316	115,233	
○ 통화금융기관예치	1,043,342	1,054,100	944,342	1,153,100	1,218,341	1,069,252	1,302,189	149,08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5,073	20,000	85,073	140,000	40,000	140,000	40,000	△100,000	
○ 유가증권매입	1,748,776	1,065,373	1,005,165	1,808,983	1,106,513	1,040,369	1,875,127	66,144	
- 채권	465,250	200,791	184,743	481,298	208,874	191,243	498,929	17,631	
- 주식	21,337	-	-	21,337	-	-	21,337	-	
- 수익증권	1,262,188	864,582	820,422	1,306,348	897,639	849,126	1,354,861	48,513	
나. 부동산	107,995	1	-	107,996	-	-	107,996	-	
○ 건 물	29,066	-	-	29,066	-	-	29,066	-	
○ 토 지	78,929	1	-	78,930	-	-	78,930	-	
다. 기타자산	800,310	75,244	-	875,554	60,260	-	935,814	60,260	
○ 구상채권	328,640	54,463	-	383,103	4,961	-	388,064	4,961	
○ 기타	471,670	20,781	-	492,451	55,299	-	547,750	55,299	
합 계	3,905,496	2,214,717	2,034,580	4,085,633	2,425,114	2,249,621	4,261,126	175,493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 잔액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감 (B-A)	비고 (상환조건, 액면가)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1. 주 식	21,337	-	-	21,337	-	-	21,337	-	-
2. 채 권	465,250	200,791	184,743	481,298	208,874	191,243	498,929	17,631	-
○국공채	264,898	112,868	103,533	274,233	117,446	107,190	284,489	10,256	-
○금융채	192,903	87,923	81,210	199,616	91,428	84,053	206,991	7,375	-
○구상전환채권	7,449	-	-	7,449	-	-	7,449	-	-
3. 기 타	1,262,188	864,582	820,422	1,306,348	897,639	849,126	1,354,861	48,513	-
○ 수익증권	1,262,188	864,582	820,422	1,306,348	897,639	849,126	1,354,861	48,513	-
합 계	1,748,776	1,065,373	1,005,165	1,808,983	1,106,513	1,040,369	1,875,127	66,144	-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입			매 각			소 재	용 도
	년월	규모	금액	년월	규모	금액		
○ 건 물	-	-	27,144	-	-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자체 업무공간 외 임대
- 본사사옥	'03.2	28,141.28㎡	27,144	-	-	-		
○ 토 지	-	-	61,444	-	-	-		
- 본사사옥	'03.2	2,690.80㎡	61,444	-	-	-		
○ 기 타	-	-	9,594	-	-	355	-	-
- 국내공관	'88.3	128.93㎡	77	'14.6	128.93㎡	355	부산	지사장 공관
	'13.11	84.95㎡	355	-	-	-	부산	지사장 공관
	'14.10	740.45㎡	4,993	-	-	-	부산	사무실
	'14.10	84.97㎡	570	-	-	-	부산	본부장 공관
	'14.10	84.98㎡	517	-	-	-	부산	해양금융부 부장 공관
	'14.10	73.40㎡	299	-	-	-	부산	해양금융부 직원 공관
	'14.10	73.40㎡	297	-	-	-	부산	해양금융부 직원 공관
	'14.11	73.40㎡	295	-	-	-	부산	해양금융부 직원 공관
	'14.12	85㎡	457	-	-	-	대구	지사장 공관
	'13.12	84.5㎡	318	-	-	-	제주	주재원 공관
	'15. 3	84.9㎡	456	-	-	-	인천	지사장 공관
	'15. 4	84.9㎡	430	-	-	-	창원	지사장 공관
	'15.11	84.8㎡	225	-	-	-	원주	지사장 공관
	'15.11	83.8㎡	305	-	-	-	전주	지사장 공관
합 계	-	-	98,182	-	-	355	-	-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말 잔액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감 (B-A)	비고 (차입 조건)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 장기차입	-	500,000	-	500,000	500,000	-	500,000	-	
- 한은장기차입	-	-	-	-	-	-	-	-	
- 통화금융기관차입	-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	-	-	-	-	-	-	
- 기타민간차입	-	-	-	-	-	-	-	-	
- 국공채	-	500,000	-	500,000	500,000	-	500,000	-	
합 계	-	500,000	-	500,000	500,000	-	500,000	-	

2017년도
성 과 계 획 서

□ 기금운용계획 성과계획서

○ 무역보험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목 차

Ⅰ. 일반현황 ····· 94

1. 공사 개요 ····· 94

2. 조직 및 재정 현황 ····· 95

Ⅱ. 2017년도 정책추진 방향 ····· 97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97

2. 2017년 재정운용 방향 ····· 98

Ⅲ. 2017년도 무역금융지원 성과지표 ····· 99

Ⅰ 일반 현황

1. 공사 개요

□ 무역보험기금 설치근거 및 목적

○ 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 설치 목적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무역보험 제도

○ 우리기업이 대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수입용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정책보험제도

☞ 금융조달 기능 및 대외위험 담보기능 수행

○ 무역보험제도는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시 **BIS비율 개선***에 **효과적임**

☞ 무역보험 담보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 0%

□ 주요 연혁

○ 1968.12.31 수출보험법 제정·공포

○ 1992. 7. 7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공사설립 이전에는 대한재보험공사(1969~1976년) 및 한국수출입은행(1977~1992년)에서 수출보험업무 담당

○ 1994. 8. 3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도입

○ 2010. 7. 6 수입보험 도입

○ 2010. 7. 7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

2. 조직 및 재정 현황

□ 조 직

○ 국내지사(16) : 중앙, 강남, 구로디지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 전북,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경남, 제주

○ 해외지사(12) :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뉴델리, 파나마, 동경, 모스크바

□ 정 원

(단위 : 명)

상임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계
5	28	65	130	136	201	565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20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8,590	8,710	8,375	8,515	8,675
(전년대비증가율, %)		(1.4)	(△3.8)	(1.7)	(1.9)
ㅇ 총계	33,762	33,022	34,593	37,055	39,625
(전년대비증가율, %)		(△2.2)	(4.8)	(7.1)	(6.9)
□ 총지출 구분	8,590	8,710	8,375	8,515	8,675
ㅇ 기금운영비	1,080	1,105	1,195	1,257	1,324
(전년대비증가율, %)		(2.3)	(8.1)	(5.2)	(5.3)
ㅇ 주요사업비	7,510	7,605	7,180	7,258	7,351
(전년대비증가율, %)		(1.3)	(△5.6)	(1.1)	(1.3)
□ 기금					
【무역보험기금】					
· (총)지출	8,590	8,710	8,375	8,515	8,675
(전년대비증가율, %)		(1.4)	(△3.8)	(1.7)	(1.9)
· 총계	33,762	33,022	34,593	37,055	39,625
(전년대비증가율, %)		(△2.2)	(4.8)	(7.1)	(6.9)

Ⅱ 2017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인수실적)** '15년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168조원 기록

○ 유가하락과 중국 등 신흥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및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매출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지원실적은 22조원 감소

- 무역보험 지원실적(조원) : ('13) 203.7 → ('14) 190.2 → ('15) 168.1

□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어려운 수출환경하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여 사상최대인 **41.7조원 지원실적 시현**

- 단체보험 활성화, 특례인수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주요실적 **지원실적 : 38.5조원(14년) → 41.7조원(15년)**
지원비중 : 20.2%(14년) → 24.8%(15년)
이용기업수 : 14,047개(14년) → 15,295개(15년)

□ **(현장경영 강화)** 2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각 지역본부별로 심사실 및 현장경영팀을 신설하였고 Mobile-K office 지속적 운영을 통해 '15년까지 41개 신흥국에 200건, U$11.6억원 무역보험 제공

* Mobile-K Office :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입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한도 책정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신속지원 프로그램

□ **(해외 프로젝트금융 지원강화)** 글로벌 은행과 U$100억 사전약정 및 국내은행과 해외 SOC펀드 조성으로 해외 프로젝트 안정적 수출금융 공급 및 국내은행 글로벌화에 기여

2.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

◈ 중소·중견기업 중점지원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시장 회복 선도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수출안전망 재원확보 및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수출초보기업 및 내수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출안전망 인프라 구축확대

* 수출안전망사업 : 수출기업 별도 부담없이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무보가 책임지는 제도

○ 다수기업·소액보증으로 보증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특례지원 대상발굴 확대 및 찾아가는 무역보험 컨설팅 강화

□ **(신흥시장 진출지원 지역 강화)** 신흥시장별 맞춤별 전략추진 및 유관기관 공조강화

○ FTA(중국,베트남), 문호개방(이란,쿠바), 성장시장(인도) 맞춤형 전략추진

○ 수출유관기관 해외시장 개척 활동(KOTRA, 중진공, 지자체 등의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참여업체 앞 Mobile-K Office서비스를 포함한 무역보험 종합 컨설팅 제공

□ **(해외프로젝트 수주경쟁력 강화)** Supply Chain Guarantee 활성화를 통한 한국산 자본재 수출 확대 및 서비스 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차세대 수출먹거리 육성

* Supply Chain Guarantee : 주요 발주처 앞 공사 보증부 신용한도 선제공

□ **(내실경영 강화)** 내실경영을 통한 기금건전성 회복으로 지속가능 경영기반 마련

○ 보험상품 내실화 및 적정 보험료율 체계 구축을 통한 수입증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축소를 통해 영업수지 개선

Ⅲ 2017년도 무역금융지원 성과지표

관리과제명 무역금융지원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최근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금건전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을 통해 선진통상강국 실현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3	'14	'15	'16	'17		
(1)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	목표	17	18	21	25	25	연간 무역보험계약 총액 대비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비중	무역보험공사 내부통계
	실적	17.6	20.2	24.8				
(2) 7대 신흥시장 지원비중 (%)	목표	(신규)	(신규)	51	52	53	연간 무역보험계약 총액 대비 7대 신흥시장 지원실적 비중	무역보험공사 내부통계
	실적		49.2	52.8				

<목표치 설정근거>

(1)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 '17년 목표 25%('15년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급증 감안 점진적 비중 확대)

(2) 7대 신흥시장 지원비중
○ 정부선정 7대 신흥시장* 지원비중을 연 1%p 증가하는 목표 설정
* 정부선정 7대 신흥시장 : 중국, 인도,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구분	'15결산	'16예산	'17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무역금융지원(1138)	일반회계	1,450 (1,450)	300 (300)	- (-)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무역금융지원

○ 사업내용 : 기업·금융기관 등에 대한 무역보험·보증 지원

○ 사업기간 : '68년 ~ 계속

○ 지원대상(무역보험계약자)

- 무역업체 : 무역업을 영위하는 모든 수출(입) 기업
- 금융기관 :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조건 : 무역보험·보증 종목별 인수심사 후 지원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